

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

『부가가치세법』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한 영업자에 대하여 『식품위생법』 제37조(영업허가 등)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(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)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일

고령군



1. 처분의 대상

업종	업소명	대표자	소재지
일반음식점	들봄가든	홍○윤	고령군 다산면 별지로 342-1
일반음식점	화덕피자 노리 327	윤○민	고령군 덕곡면 노리1길 19-3, 1층

2. 처분내용 :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

3. 직권말소 예정일자 : 2026. 7. 20.

4.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: 사업자등록 폐업

5. 근거법령 : 『식품위생법』 제37조 제7항

6. 공고기간 : 2026. 7. 2.(목) ~ 7. 16.(목)(15일간)

7. 고지사항

- 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(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행정심판은 180일이내, 행정소송은 1년이내)에 재결청(경상북도지사)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-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(<http://www.simpan.go.kr>)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, 사건 진행상황 열람,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,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8.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: 고령군청 관광진흥과 식품진흥팀(☎ 054-950-6693)